

포항공과대학교 대학원학칙

제정 1987.12.29	개정 1998. 7. 1	개정 2007.12.21	개정 2013. 4. 1
개정 1988.11.30	개정 1999.11.17	개정 2009. 3. 1	개정 2013. 9. 1
개정 1990. 7.28	개정 2000. 3. 1	개정 2009. 3.24	개정 2014. 1. 1
개정 1990.11. 8	개정 2000. 7.20	개정 2010.10.18	개정 2014. 3. 1
개정 1991.12. 4	개정 2001. 6. 1	개정 2010.12. 9	개정 2014. 4.17
개정 1992.10.27	개정 2003. 8. 8	개정 2012. 1. 1	개정 2014. 5.28
개정 1994.10.21	개정 2004. 9. 1	개정 2012. 4. 1	개정 2016. 6.23
개정 1997. 3. 1	개정 2005. 4.21	개정 2012. 7. 8	개정 2017. 4.20
개정 1997.11.17	개정 2006.11. 1	개정 2012.11.1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대학원은 과학기술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위한 응용방법을 교수 및 연구함으로써 전문지식을 갖춘 창의적 과학인재를 양성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국가와 인류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정) 본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이하“석사과정”이라 칭함)과 박사학위과정(이하“박사과정”이라 칭함),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각 학위과정에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0.18)

제3조(학위수여) 석사 및 박사학위 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통합과정에 재학중인 자가 과정을 포기하고 석사학위 수여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학과 및 정원) ① 일반대학원에는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화학공학과, 창의IT융합공학과, 첨단재료과학부, 융합생명공학부, 정보전자융합공학부, 첨단원자력공학부, 환경공학부 및 학과간 협동과정으로 시스템생명공학과정, 기술경영과정을 둔다. (개정: 2012.1.1) (개정: 2012.11.16) (개정: 2013.4.1.)(개정: 2014.4.17.)(개정: 2016.6.23.) (개정: 2017.4.20.)

② 과정별 정원은 교육부에서 통보된 정원으로 한다.

제5조 (삭제)

제 2 장 입학 · 재입학

제6조(입학시기) 본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지원자격) ①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박사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8조(지원절차) ① 대학원의 각 과정에 입학할 지원자는 과정별로 다음의 서류를 전형료와 함께 제출하고 소정의 입학전형을 치러야 한다.

1.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에 지원하는 자

- 입학지원서, 대학의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연구실적 및 연구계획서

2. 박사과정에 지원하는 자

- 입학지원서, 석사학위증명서 또는 석사학위 수여예정증명서, 대학 및 대학원 성적 증명서, 석사학위논문 별쇄본

②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자가 통합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지원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입학전형) ① 대학원의 입학에 필요한 전형방법은 아래와 같다. 다만, 총장은 필요에 따라 일부 전형방법을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전형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2. 학력 및 학업성취에 대한 서류심사

3. 전공구술시험

②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자가 통합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의 전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입학절차)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내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 2(재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당해학년도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1. 학칙 제15조 제3항의 재학년한 초과자

2. 학칙 제15조 제4항의 제적의 징계를 받은 자

② 재입학자에 대하여는 종전에 이수한 교과내용을 참작하여 그 학점을 재사정한다.

제 3 장 등록 및 학적변동

제11조(등록)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간중에 등록금을 납부하며 수강신청을 필하여야 한다.

제12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의 1/4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개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석사과정에서는 3개 학기, 박사과정에서는 4개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무 복무를 위한 군입대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업으로 인한 일반휴학은 1회에 한하여 최대 4학기 까지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복학) ① 휴학기간의 만료 및 휴학사유가 소멸된 자는 당해학기의 등록기간중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하여야 한다.

② 군제대 복학은 제대후 1년 이내에 한하여 허가하며 군제대 일자가 수업일수 1/4 이내일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의 자퇴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5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제 적하고 이러한 내용을 본인 및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다음 학기에 복학하지 않은 자
2.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간중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3. 재학년한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
4.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의 징계를 받은 자

제15조의 2(재심청구) 제15조에 의한 대학원위원회의 제적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적 통보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재입학) (삭제)

제17조(전과) 석사과정 학생으로서 전과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최종허가를 받아 전과할 수 있다. 단, 전과의 시기는 입학 후 2학기 이내로 한다.

제 4 장 수업 및 학점

제18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 이상(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19조(교과과정)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대학원의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단, 학점의 조기취득, 과정간의 학점이월, 타대학원의 취득학점 인정, 학위논문의 탁월성이 인정되어 학위수여 요건을 조기에 충족시킨 자는 수업연한을 통합과정은 1년, 석·박사과정은 각각 6월을 단축할 수 있다.

②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석사과정 3년, 박사과정 6년, 통합과정 7년으로 한다.

③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자가 통합과정에 입학할 경우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은 석사과정의 이수학기를 포함한다.

④ 각 과정별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학연한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재학연한을 1년씩 총장이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상주재학) 최소한 석사과정의 학생은 2개학기, 박사과정의 학생은 4개학기, 통합과정의 학생은 6개학기를 상주재학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2조(과정의 수료) ① 이 학칙 제23조의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B⁺(3.0)이상이며 박사과정에서 4개학기 이상, 통합과정에서 6개학기 이상을 등록한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에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전 제1항에 의해 수료한 자로서 학위취득에 필요한 연구를 하는 연구생에게는 학생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23조(수료학점)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은 석사과정은 28학점, 박사과정은 32학점, 그리고 통합과정은 60학점으로 한다. 단, 각 과정에서 이수할 최저 교과학점은 각 학과(학부)별로 정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4조(교과학점과 연구학점) 교과학점은 대학원에서 별도로 정한 교과과정의 과목을 통해서 취득한 학점을 말한다. 단, 학사과정의 교과목을 수강하여 교과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400단위 과목 6학점에 한한다.

제25조(학기당 취득학점) 대학원과정의 학생은 연구학점을 포함하여 매학기 3학점 이상 18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9.3.1)

제26조(학점 부여 기준) 교과학점은 1학기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논문연구, 세미나, 실험·실습 등의 연구학점은 이에 준하여 따로 정한다.

제27조(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 ① 본 대학교 학사과정의 학생이 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 또는 통합과정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학생이 박사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은 박사과정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의 각 과정에서의 인정 범위는 각 과정의 졸업에 소요되는 학점을 초과한 학점으로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8조(성적평가) ① 교과학점이 부여되는 과목의 성적은 시험성적, 과제물, 출석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여하며,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A+	A°	A-	B+	B°	B-	C+	C°	C-	C+	D°	D-	F
평 점	4.3	4.0	3.7	3.3	3.0	2.7	2.3	2.0	1.7	1.3	1.0	0.7	0

- ② 연구학점이 부여되는 과목의 성적은 S(합격) 또는 U(불합격)로 부여한다.
- ③ 성적평가 자료가 미비할 때에는 잠정적으로 I(미완)의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 ④ (삭제: 2003.8.8)

제29조(학점인정 및 평점계산) ① D-이상 또는 S를 받은 과목의 학점만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S학점은 평점 계산에는 포함치 아니한다.

제30조(수강신청의 변경) 학생은 수강신청 정정 기간 동안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4.1.1)

제31조(수강포기) 학생은 개강후 4주째부터 9주 이내에는 과목 담당 교수와 학과주임 교수의 승인을 받아 수강을 포기할 수 있으며, 그 성적은 W로 처리한다. (개정: 2014.1.1)

제32조(추가시험)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때는 과목담당 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추가시험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추가시험은 당해 학기 성적정정마감일 이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9.1)

제33조(학점인정일수) 타당한 사유없이 수업일수의 1/4이상을 결석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34조(재수강) 재수강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하다.

제35조(타대학원 학점인정) ① 각 과정에 입학한 학생이 국내·외의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점교류협정이 체결되었거나 총장이 인정하는 국내·외의 타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과정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제36조(특별강좌) 본 대학원 석·박사과정에는 방학기간중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강좌를 총장이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 5 장 수업년한 초과 재학(삭제)

제37조 (삭제)

제38조 (삭제)

제39조 (삭제)

제40조 (삭제)

제41조 (삭제)

제 6 장 비 학 위 과 정

제42조(공개강좌) 각 학과에서는 교양 또는 학문연구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강좌를 총장이 개설할 수 있다.

제43조(연구생) ① 대학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특정과목 또는 과제에 수강을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심사와 전형에 협력할 경우 대학원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연구생의 자격으로 청강 또는 연구할 수 있다.

② 연구생은 청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청강에 의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연구생으로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는 별지서식 제1호의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 7 장 외국인 등의 학생

제44조(제출서류) 재외교포 및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의 각 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에 명시된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1. TOEFL 성적(비영어권 국가의 경우)
2. 출신대학 교수 2인 이상의 추천서

제45조(입학사정) 입학허가 여부는 제44조의 서류와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위원회에서 사정한다.

제 8 장 재정지원제도

제46조(재정지원) 대학원생에게는 장학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3.1)

제47조(학생조교 임용 및 수당지급) 학생조교 임용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8조(장학금 이중 수혜의 금지) (삭제: 2014.3.1)

제 9 장 징 계

제49조(학사경고) ① 매학기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B°(3.0)에 미달된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과한다.

② 재학기간중 2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제적할 수 있다.

제50조(징계) ①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학생생활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한다.

② 징계는 근신, 정학(유기, 무기)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③ 모든 징계는 징계기간이 만료됨으로 해제된다. 징계기간 만료전이나, 무기정학자의 징계해제는 주임교수가 지도교수의 의견을 참작하여 학생생활위원회에 징계해제를 청원한다.

제10장 학생 활동

제51조(대학원총학생회) ① 대학원생 자치활동을 위한 기구로 대학원총학생회를 둔다.

② 대학원총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대학원총학생회칙으로 정한다.

제 11 장 대 학 원 위 원 회

제52조(구성) 대학원위원회는 본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무처장, 입학학생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개정: 2014.3.1)

제5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생의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대학원의 학과, 전공의 설치, 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대학원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5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방법)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대학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준용조항) 이 학칙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57조 (삭제)

제 12 장 학 칙 개 정

제58조(학칙개정절차) 이 학칙의 개정은 사전공고 및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4년 10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7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학칙은 1999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제4조의 규정에 대하여 시행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이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중 제23조는 200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1999학년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이전에 시행된 것은 이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학칙은 2001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3년 8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6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200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9년 3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0년 10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0년 12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4조(학과 및 정원)의 개정은 2011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2년 7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2년 11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4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5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6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7년 4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